2025년 바이오글로벌 시업화지원센터 기업지원시업 공고

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에서는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의 일환으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03월 06일

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장

1 지원개요

- □ **지원규모** : 시험평가 지원(8백만원), 인허가 지원(국내 8백만원, 국외 3천만원), 해외 마케팅 지원(5백만원), 해외전시회 지원(직접지원), 글로 벌 시장진출 컨설팅(직접지원), 제품 디자인 지원(직접지원)
- □ **지원목적** : 글로벌 규제 대응의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전주기 실증지원 체계를 확보하여 다양한 시장 맞춤형 제품 고도화 지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화 지원
 - * 의료·건강·영양 등 치료·회복·관리 목적으로 한 신체 기능 활성화 제품으로써 임상실 증 등 데이터 기반 기능성 소재·식품(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특수의료용도용 식품(메디푸드) 등)
- □ **신청자격**: 바이오 생체활성제품을 활용한 제품의 기술지원을 통한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영리기업
 - * 대상 소재 범위 : 1)국내 연구·개발이 완료된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2)수입에 의존하는 바이오 생체활성제품에 대한 국산화 완료 소재
 - ** 대상 제품: 1)특수의료용도식품, 2)건강기능식품, 3기타 활용 제품/기능성표시식품) 등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국내 소재지가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 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세부 지원내용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건수 및 금액	수행기관
	시험평가 지원사업		- 기능성 스크리닝 및 세포 수준 효능검증, 품질평가, 성분분석, 간이 독성 평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등 지원 - 시험평가 및 성적서 발급 지원	5건, 8백만원/건	바이오글로벌
	인허가 지원사업	국내	- ISO 22000:2018, HACCP, Halal, USDA-NOP, FSMA(VQIP), BRC, EAC, 비건, 어린이 기호식품 등 품질인증 지원	2건, 8백만원/건	사업화지원센터
기술 지원	국외 글로벌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 미국(FDA) 수출을 위한 인허가 지원 등 - 해외규격 DB 기반의 타겟 시장 진입 전략 컨설팅 - 할랄, 코셔, 비건 등 인증별 기업	1건, 3천만원/건 1건, 직접지원	
	제품디자인 지원사업		맞춤형 식품인증 가이드 분석 -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용기의 형태, 크기, 재질 등을 통해 사용자가 편리를 분석한 디자인) 제공 -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로고, 심볼, 컬러, 슬로건 등 기업브랜드) 확립	3건, 직접지원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외 마키 지원사		- SNS, 인플루언서, 광고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4건, 5백만원/건	
사업화 지원 해외전시회 공동관 참가		호	[미국 뉴욕 팬시푸드쇼 2025 박람회] - 전시기간: 2025.06.29.(일) ~ 2025.07.01.(화) 3일 - 개최장소: 미국 뉴욕 - 제품전시: 사업부스 내 수혜기업 제품 홍보 - 통역비: 행사 기간 통역비 (통역 1명과 함께 수혜기업 제품 홍보) - 유통비: 전시품 운송 및 통관 지원 - 디자인 및 번역비: 참가제품 홍보를 위한 배너, 현수막 제작 및 내용 번역 지원	4개사, 직접지원	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

공통 지원

(필수)

[2025 Reha Homecare 바이오헬스케어산업전 참가]

- 2025. 05. 29. ~ 31. 코엑스전시회 참가지원

- 전시회 기간 중 전시 부스 상주 필요

- 전시 부스 및 테이블1, 의자1 기본 제공

※ 대상제품: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 분야별 중복 지원 가능하며 지원분야별 개별 신청 필수

※신청시 유의사항

- 1) 신청기업의 바이오 생체활성제품은 국내 개발원료로서 지적재산권이나 생물다양성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원료이어야 함
- 2) 시제품 제작 등 지원사업 종료 이후 판매용 제품 생산은 기업 자부담
-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 신고 보유한 기업
- 4) 사업비 직접 지급이 아닌 공급기관을 통한 지원기업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부담 10% 이상부담 필요)
- 5) 선정 시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에 따른 공통 지원 프로그램에 필수 참석(전시회,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등)
- 6) 지원사업 종료 후 3년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제출한 자료 는 본 사업의 실적 보고용으로만 활용됨)
 -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5. 10. 31.
 - □ **지원방법** : 수요기업 및 공급기관 매칭을 통한 공급기관(기업) 직접지원
 - 지원 프로세스 (프로그램별 중복지원 가능, 개별 신청 필요)

사업 공고		선정 및 협약		공급기관 사업수행		결과보고		성과 도출
수혜기업 지원 프로그램별 공급기관 1:1 매칭 하여 지원	->	협약 후 공급기관 지원	→	공급기관 직접수행	->	공급기관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수혜기업 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 확인 및 입력

- * 수혜기업(지원사업 선정된 기업) 직접지원이 아닌 공급기관(기업) 직접지원
- □ **사업비 구성** : 기업지원금 + 기업부담금(기업지원금의 10%)

<사업비 구성 예시>

총 사업비	기업지원비	기업부담금 (현금)		
11,000천원 (110%)	10,000천원 (100%)	1,000천원 (10%)		

* 부가세 포함 지원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03. 06.(목)** ~ **03. 28.(금) 18**:**00** (시간엄수)

○ 신청방법 : https://www.bsms.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시스템 접수

○ 문의 처

- 시험평가, 인허가, 해외 마케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구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한겨레 연구원	041-414-7735	marsalien@kbcluster.or.kr	

- 글로벌 시장진출 컨설팅, 제품 디자인 지원사업

구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수하 연구원	010-7997-5834	dmddo1009@konyang.ac.kr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신청서)	8	기타 기업서류		
2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4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기업신용도 평가 서류		
5	기업현황카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 유		
6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선문판매업, 일반판매업, 허가·등록증 고그기과 건정서, 고그기과 회사 스케셔		
7	자가진단표		공급기관 견적서, 공급기관 회사 소개서 기타 우대사항 증빙 서류 등		
\ 9 / -	w 귀하기시 조 의하기기위(기사 지즈크의 기사위기이기의 기계기 그리 기기기 기기 기				

※ 지원사업 중 해외전시회(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 지원), 글로벌 시장진출 컨설팅, 제품 디자인(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 신청기업의 경우 6.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8. 기타 기업서류 내 7) 공급기관 견적서 서류 제외

☐ **추진일정**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방법 및 기업부담금

- 선정기업은 지원내역 총 금액의 10% 자부담 필수
 - ※ 지원사업 중 해외전시회 공동관 참가(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 지원), 글로벌 시장진출 컨설팅. 제품 디자인(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 신청기업의 경우 해당없음
- 지원내역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선정기업이 부담하며, 지원금은 선정기업으로 직접 지급 불가, 사업비를 기업에 지원하는 사 업이 아닌 공급기관을 통하여 기술지원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 선정 후 협약된 지원금액 이내에서 공급기관의 직접 수행 지원

□ 2025 사업성과보고회 참석(필수)

- 수행 내용에 따른 결과물 제출 및 성과 관리 내용 추가필요
- 2025. 12. 17. (예정) 사업성과보고회 홍보물 소개 및 간담회 참가 ※ 기업별 1명 이상 필수 참석 필요

4 │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방법

- 서류심사(1차, 필요시):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검토
- 발표심사(2차): 지원기업의 PT 발표를 통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결과 70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예산 범위를 고 려하여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
- □ 발표심사절차: ① 지원기업 PT 발표 → ② 질의·응답

① 지원기업 PT 발표	→	② 질의·응답
10분		10분

- □ **평가기준**: 적합성, 내용 및 범위, 필요성, 기업역량, 기대효과 등 기준항목에 대한 평가위원 점수 합산 [※수출실적 기업 우대]
- □ 결과발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5 기타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중복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중도포기 시에도 향후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은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업의 추진내용 및 목적을 고려하여 신청 내용 사전검토 후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기관 변경 가능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 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사업협약시 자부담금 납입 후 협약진행
- 지원계획서 내 정성적·정량적 목표치는 달성 가능한 수치를 작성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의를 통해 확인

□ 지원제외 대상

-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지원 분야 및 지원내용이 본 지원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 사항(보고서 제출, 환수 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였거나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
 - ※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거나 대표가 신용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금융 및 보험 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 원부 제2024-218호)」을 준용함